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에 마약류 밀반입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정 1명)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관련 안전 검사 기준 고도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6명(경위 6명, 경사 6명, 경장 6명, 7급 7명, 8급 6명, 9급 5명) 및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2명, 경장 4명, 순경 3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종합상황실 정원 27명(경위 27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27명)하고, 파출소 정원 2명(경장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2명)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 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해양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 계 “518”을 “52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20”을 “421”로 하며, 총경 이하 “411”을 “412”로 하고, 일반직 계 “98”을 “9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7”을 “98”로 한다.

별표 5 중 총 계 “12,531”을 “12,583”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355”를 “11,387”로 하며, 총경 이하 “11,346”을 “11,378”로 하고, 일반직 계 “1,176”을 “1,19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64”를 “1,184”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정원 대비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518</u>	<u>520</u>	+2
경찰공무원 계	<u>420</u>	<u>421</u>	+1
·	·	·	
·	·	·	
총경 이하	<u>411</u>	<u>412</u>	+1
일반직 계	<u>98</u>	<u>99</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7</u>	<u>98</u>	+1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5]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2,531</u>	<u>12,583</u>	+52
경찰공무원 계	<u>11,355</u>	<u>11,387</u>	+32
·	·	·	
·	·	·	
총경 이하	<u>11,346</u>	<u>11,378</u>	+32
일반직 계	<u>1,176</u>	<u>1,196</u>	+20
3급 또는 4급 이하	<u>1,164</u>	<u>1,184</u>	+20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9